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9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 의원안, 주철현의원안)	3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25년 말 동 제도의 일몰 예정으로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의 복리 향상 및 지

역 사회의 소득 열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겨 농림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이 약화
될 우려가 큼.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
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
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만희 의원안, 주철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가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u> ○ 시행일: 공포한 날(이만희의원안) 2026. 1. 1.(주철현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 12. 2. 발의(의안번호 6093),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말에서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72조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세표준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음.¹⁾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조합법인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시키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동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8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운영
1999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율: 12%
2001	·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세무조정 신설
2009	· 세율 인하: 12% → 9%
2013	· 세무조정 대상 확대: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 경비 + 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5	· 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
2016	· 2016년까지 합병 시 신설(존속)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2018	· 적용기한 3년 연장(2020년 말까지)
2021	· 적용기한 2년 연장(2022년 말까지)
2023	· 적용기한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 동 특례에 따라 2023년에는 총 5,113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3,289억원, 2025년에는 3,444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289	3,444

주1: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주2: 2019년 신고기준 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합법인의 수는 2,945개(새마을금고 919개, 신협 865개, 농협 628개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공익단체와 비교할 때 지원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²⁾ 2020년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³⁾.

특히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동 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법인과 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⁴⁾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7~8.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12-14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139.

문 의 처

02)6788-5154
